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 ★ 중죄 유죄선고로 현재 연방 또는 주 교도소 복역 중이 아닌 경우 및
 - ★ 18세 이상
 -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2. 등록 유권자인 경우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유권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는 집계됩니다.
3. 투표소가 폐장되었을 때 여전히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
4. 비밀투표를 할 권리. 어떤 사람도 유권자를 귀찮게 하거나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5. 유권자가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이미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투표용지에 대해 질문, 우편투표용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로 교환, 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유권자가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7.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투입할 권리, 캘리포니아 주에서.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 해당 선거구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 경우.
9.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질문할 권리,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 포함.
유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선거 활동을 신고할 권리, 선거관리 담당관 또는 총무처장관실로 신고.

특별 공지

- 투표소는 우편으로 받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표시된 날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됩니다.
- 잠정투표를 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투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선거 관리인으로부터 또는 지역 선거 담당관이 우송한 정보를 읽음으로써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등록한 유권자는 연방법에 따라 적절한 신분증이나 다른 신원 확인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는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잠정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 연방법 및 주법에 의한 모든 투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자신을 유자격 유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투표기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웹사이트: www.sos.ca.gov

 전화번호: (866) 575-1558

 이메일 주소: elections@sos.ca.gov